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인공지능의 도입을 적극행정의 정의에 포함〉
■ 최보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366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인공지능의 도입을 적극행정의 정의에 포함〉
■ 최보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365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조문상

목 차

I . 개 요	1
【최보윤의원안】 (국가공무원법)	1
【최보윤의원안】 (지방공무원법)	2
II.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주요내용	3
2. 검토의견	6

I. 개 요

【최보윤의원안】(국가공무원법)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최보윤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3. 26.

다. 회부연월일 : 2025. 3. 2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각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인공지능 도입을 적극행정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하여 공공부문에서의 인공지능 도입을 장려하고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절차법」(의안번호 제9364호) 및 「지방공무원법」(의안번호 제93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최보윤의원안】 (지방공무원법)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최보윤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3. 26.

다. 회부연월일 : 2025. 3. 2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인공지능 도입을 적극행정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하여 공공부문에서의 인공지능 도입을 장려하고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2).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364호) 및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3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각 개정안은 “인공지능의 도입”을 적극행정의 정의 규정에 포함시키려는 것임(국가공무원법-안 제50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지방공무원법-안 제75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구분	현행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① 각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0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① -- ----- ----- 개선, 「행정절차법」 제5조의3에 따른 인공지능의 도입----- ----- ----- ----- ----- ----- -----.
	②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기관에 적극행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생략) 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	② ----- ----- ----- ----- -----. 1. (현행과 같음) 2. -----개선, 인공지능의 도입----- ----- ----- -----

구분	현행	개정안
	정한 사항 3. (생략) ③ ~ ⑤ (생략)	----- ----- 3.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적극행정위원회를 둔다. 다만, 적극행정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를 말한다)가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생략) 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	제75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① -- ----- ----- -----개선, 「행정절차법」 제5조의3에 따른 인공지능의 도입----- ----- ----- ----- ----- ----- ----- ----- ②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개선, 인공지능의 도입----- -----

구분	현행	개정안
	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생략) ③ ~ ⑤ (생략)	----- ----- ----- ----- 3.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¹⁾

현행법은 “적극행정”을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에서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적극행정의 요건으로 제시하여 개념을 구체화하고 있음.²⁾

그 밖에 “적극행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 「행정기본법」에서는 “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 및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³⁾

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이 동일하므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공무원법」을 중심으로 검토함.

2)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국무조정실을 말한다.

3) 「행정기본법」

제4조(행정의 적극적 추진) ① 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 및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의 적극적 추진 및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구체적인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은 인공지능을 행정절차 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일반적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행정절차법」 개정⁴⁾을 전제로 “적극행정”에 대한 정의 규정을 정비하여 “인공지능의 도입”이라는 행위 유형을 “적극행정”의 개념에 포함시키려는 것으로,

이에 따르면, “인공지능의 도입”이 “적극행정”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구성 요소에 해당한다는 것이 규범적으로 명확해짐에 따라 공공부문의 행정 사무 수행에 있어 인공지능의 도입을 유도하여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궁극적으로는 인공지능의 활용을 통한 행정 사무의 효율성 증진 등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적극행정”은 공직이 지향하는 가치나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으로서 “인공지능의 도입”이라는 수단적 개념을 그 자체로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과 같은 차원에서 “적극행정”의 전형적인 행위 유형 또는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있는 바, 개정안이 “적극행정”이 무엇인지에 관한 정의 규정으로서 내용적 타당성이나 체계적 정합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4)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대표발의안, 의안번호 제2209364호, 2025.3.26.발의)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계류 중에 있음.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의 정의 규정에 “인공지능의 도입”을 추가하는 것이 공공 부문에서의 인공지능 도입 장려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인공지능을 도입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의 규정을 인사행정의 기본적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에 두는 것은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점, 직종·분야를 불문하고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지녀야 할 직업윤리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는 “적극행정”의 정의에 특정 분야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은 “적극행정”의 본래 취지와 조화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행정안전부는 공공 부문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을 장려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나, “적극행정”은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을 때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바, “인공지능의 도입” 행위 자체를 “적극행정”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42